

『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18일

나. 발 의 자 : 김낙관, 강승수, 김재우, 김춘남
김택호, 장미경, 홍난이 (7명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낙 관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2017. 10. 17.)에 따라 구미시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 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적용범위와 예외사항 (안 제3조)
-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(안 제4조)

-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구 춘 서

- 본 『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』은

- 상위법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연구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동 활용을 통한 중복연구 방지와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